

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09./~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2013년 12월 31일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「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(안 제3조의 2)
-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.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
-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붙임

- 입법예고 : 2013. 8. 6. ~ 8. 26. (20일간)
- 조문변경
 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변경
 - 부칙 조항 문구 조정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 : 붙임
- 조례 일부개정 방침문서 : 붙임

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기금”을 “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시”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며,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하희용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장애인복지담당 이규석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선화 (행정 2204)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,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안산시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<u>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....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장애인"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</p>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<u>시의 출연금</u> 2. <u>(생 략)</u> 3. <u>기타 수입금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<u>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. 1. <u>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.</u> 2. <u>(현행과 같음)</u> 3. <u>그 밖의</u>.....</p>
<p>제3조의 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의 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
<p>제4조(기금의 사용 및 용도) ① <u>(생 략)</u> ② 1. ~ 3. <u>(생 략)</u> 4. 그 밖에 장애인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<u>시장</u>이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4조(기금의 사용 및 용도) ① <u>(현행과 같음)</u> ② 1. ~ 3. <u>(현행과 같음)</u> 4. <u>안산시장</u>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기금운용의 계획)</p> <p>① <u>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(생 략)</p> <p>1.(생 략)</p> <p>2.<u>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4.(생 략)</p> <p>③(생 략)</p>	<p>제10조(기금운용의 계획)</p> <p>① <u>시장....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<u>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 <u>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 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기금을 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해당연도</u></p> <p>③.....<u>에 따라.....</u></p>